

복리후생관리내규

목 차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1
제2장 건강검진	
제 2 조(건강검진)	1
제 3 조(정밀검사)	1
제3장 직장 동호회	
제 4 조(목적)	1
제 5 조(대상)	1
제 6 조(조직 및 운영)	1
제 7 조(지원사항)	2
제 8 조(제한사항)	2
제4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9 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2
제5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10조(목적)	2
제11조(정의)	2
제12조(적용대상)	2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2
제14조(복지포인트 사용한도)	2
제15조(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2
제6장 하계휴가비	
제16조(하계휴가비)	3
제7장 생일축하금	
제17조(생일축하금)	3
제8장 도서구입비	
제18조(도서구입비)	3
부칙	3
별지	
1. 운동동호회 운영신청서	4
2. 동호회 회원명부	5
3. 동호회 가입신청서	6
4. 동호회 운영결과보고서	7

복리후생관리내규

제정	2016.	7.	14.
개정	2018.	1.	2.
개정	2018.	8.	1.
개정	2020.	1.	21.
개정	2020.	9.	29.
개정	2021.	2.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의 보건관리, 복리후생 및 건전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

제2장 건강검진

제2조(건강검진) ①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진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 중 입사 및 복직 직원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3조(정밀검사) ① 검진결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정밀검사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3장 직장 동호회

제4조(목적) 위원회 직원의 교양, 취미, 체력증진 활동 등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장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 2020.9.29.>

제5조(대상) ① 동호회 가입대상은 위원회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

②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자(검사관 등)도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자율적인 동호회 운영을 위해 종목별로 운영자를 각각 지명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희망 종목 중 1종목을 선택하고, 종목별로 지명된 운영자에게 정한 기일 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목별 운영자는 정해진 종목별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동호회 운영 결과보고서를 상·하반기별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④ 운영종목은 희망에 따라 정하되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동호회는 종목별로 활동장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⑥ 직원은 필요시 동호회 참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다. 단, 교체 시에는 종목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위원회는 직원에 한하여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회 지원비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의 대회 교류 또는 행사 참가 시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한사항) 운동에 필요한 경기용구 및 개인용구는 개인부담으로 한다.

제4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제9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위원회 임직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복리후생 확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10조(목적) 위원회 직원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로의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정의)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 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8.8.1.>
2. “기본항목” 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 중에서 위원회 직원의 복지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개정 2018.8.1.>
3. “자율항목” 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개정 2018.8.1.>
4. “복지포인트” 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적용대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는 위원회 일반직 직원 및 계약직으로 한다.<개정 2018.8.1.>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 등으로 한하고, 자율항목은 여가활용·가정친화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4조(복지포인트 사용한도) 복지항목별로 복지포인트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원회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해임·정직·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복지포인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6장 하계 휴가비

제16조(하계휴가비) ① 위원회 임직원에게는 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계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년 7월 보수 지급 시에 지급한다.

제7장 생일축하금

제17조(생일축하금)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1.>

② 생일축하금은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 2018.8.1.>

제8장 도서구입비

제18조(도서구입비) ① 직원에게 연 2회(상·하반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1.>

② 도서구입은 구입 시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지원부에서 필요한 책 제목을 제출 받은 후 일괄 구매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2., 2018.8.1., 2021.2.3.>

제9장 명절교통비

제19조(명절교통비) ① 위원회 임직원에게는 연 2회(설날 및 추석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② 명절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21.>

부 칙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과 「동호회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는 2016년 말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8.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동호회 운영신청서

구 분	내 용	비 고
○ 운영종목		
○ 구성일자		
○ 운영장소		
○ 주요 운영계획		

20

○ 회 장 (서명)

○ 총 무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동호회 회원명부

○ 종 목 명 :

○ 제 출 자 : 종목회장 (인), 총 무 (인)

연번	성 명	부 서 명	연번	성 명	부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별지 제4호 서식]

동호회 운영 결과보고서

종 목 명			보 고 일	
회 원 수	명		참가인원 (참석률)	
회원명단	연 번	성 명	연 번	성 명
운영결과				
요청사항				
보고자	총 무 (인)		확인자	종목회장 (인)